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영토 확립의 억측 주장

-대일평화조약 직후의 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崔長根*

(e-mail: nihonbu@daegu.ac.kr)

目次

1. 들어가면서
 2. 한국정부의 독도영유권 선언과 실효적 관리
 3. 평화선 선언에 대응하여 일본영토론 주장
 4. 한국에 대응하여 일본영토로서의 논리계발
 5. 한국의 독도점유에 대응하여 죽도관리조치 단행
 6.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대일평화조약이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다. 양국 간에는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지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으로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처리되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어선을 나포한다는 경고와 더불어 실제로 일본선박을 나포했고,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선박에 대해서는 접근을 막기 위해 총격을 가했다. 이때에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 실효적 점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 단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일본정부는 국회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유약한 외교자세라고 비난하자, 헌법상 무력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워 평화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여 일본순시선에 대해 포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을까? 일본정부가 강력히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음에 분명하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연합국측이 오히려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했다는 것이다.¹⁾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의 실효적 관리 상태로 변경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정부는 한국의 실효적 관리 상황을 변경하지 못한 채,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줄곧 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대일평화조약 직후의 국회의사록을 분석하여 이러한 일본의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국회의사록을 분석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는 없다.

2. 한국정부의 독도영유권 선언과 실효적 관리

2-1. 영유권 확립에 대한 대일 성명과 독도에서의 조업 개시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한국은 독립되었고, SCAPIN 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제1-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처리했다.²⁾ 그런데 도중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일본은 미국에 접근하여 「독도와 한국영토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일본영토로서 권원이 있다.」³⁾ 식으로 거짓정보를 흘려 일본영토화를 시도했다. 일본의 침

1) 당시 야당 전문위원 가와카미는 1953년 11월 4일 국회에서 「일본의 영토라고 한다면 거기서 물고기를 잡다가 훈련 때문에 죽었을 경우에 저쪽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항의 같은 게 성립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의를 받고 이 죽도를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이 죽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했다는 해석이 성립되는 것이다. 첫째 이 평화조약이 비준하던 당시에 제출한 그 지도, 그 뒤에 정부가 서둘러 취소했습니다만, 그 지도에는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역(領域)이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 안에는 분명하게 죽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중의원에게는 제출되었습니다. 왜 제출을 하다가 중단한 것일까요? 이는 미국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의 반증입니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가와카미 위원의 발언, 「중의원-외무위원회-5호, 1953년 11월 4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192.

2)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보전협회,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독도연구보전협회, pp.165-195.

략적인 행동은 다소 미국을 움직이긴 했지만, 연합국의 핵심국가였던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까지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1차-5차 초안(6차 초안에서 일본영토로 명시)에서 한국영토로서 명시되어있었던 것이 원안에서는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어업에 관한 경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관례에 의거하여 평화선을 선언했고,⁴ 거기에는 연합국정책이었던 SCAPIN 677호에 의한 한일 간의 국경선과 맥아더라인에 의한 어업경계선으로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한국연안의 어업자원을 확보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평화선과 독도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평화선 조치는 연합국의 정책에 의거한 것이었는데, 연합국이 한국정부의 평화선조치에 의한 죽도의 영토주권확립에 대해 방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정부공선(公船)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하였을 때 총격을 가하여 격퇴했고,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포하거나 포로의 감금조치를 취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단지 한국정부에 대해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중지를 요청하는 항의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2-2. 한국정부의 일본의 죽도 관리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조치

한국은 1945년 독립과 더불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그곳은 어민들의 어업기지가 되었다. 그런데 1953년 7월 4일 오다카 위원의 지적에 의하면 「원래 죽도문제라는 것은 지난 5월 28일 시마네현(島根縣)의 죽도에 한국어선 10척과 어민 30명이 상륙하여 패류와 해조류를 어획하고 있는 것을 동현(同縣)소속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확인한 후 바로 수산청에 보고한 지 1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⁵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은 1953년 5월 28일 일본순시선을 독도에 파견하여 독도에 상륙한 한국인 30명과 한국어선 10척이 확인했던 것이다. 이처럼 평화선 선언 이후 일본순시선은 독도에 한국인의 실효적 점유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카자키(岡崎) 국무대신의 1953년 7월 8일 발언에 의하면, 「맨 처음 죽도에 한국어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은 5월 28일입니다. 이것은 시마네현

3)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백산자료원, pp.33-71.

4)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설명원의 발언, 「참위원 -수산위원회- 폐10호, 1953년 10월 27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172.

5) 오다카 위원의 발언, 「수산위원회-9호, 1953년 7월4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85.

(島根縣)의 시험선이 발견한 것이고, 그 후 6월 20일쯤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죽도에 다시 갔지만 이때는 파도가 심해서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한 번 더 갔을 때 한국어민 6명이 있었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날씨가 회복되어 자신들을 데리러 오는 배가 올 때까지 더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를 허락했고,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島根縣 隱地郡 五箇村)라는 낚시터와 불법어업을 금지한다고 하는 낚시터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순시선이 다시 한 번 죽도에 가보니 이미 6명의 한국인은 없었으며, 세웠던 낚시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외무성은 6월 22일에 한국대표부에게 이 죽도에 한국어민이 불법 상륙하여 불법 어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6월 26일 한국대표부로부터 죽도는 한국영토의 일부이며 따라서 일본 측으로부터의 항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측에서 한국의 주장에 대해 죽도가 당연히 일본의 영토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차 반박서면을 제출할 생각으로 지급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 측도 군함을 파견한다든가 어떤다 하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⁶ 또한 「6월 20일」⁷에 순시선을 그쪽에 보내본 결과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관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외무성은 각 부처와 연락을 취하여 30일에 우선 첫째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술서와 발포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서를 한국대표부에 보냈습니다. 이 「6월 30일」 구술서에는 지금까지의 역사와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일일이 기재하여 죽도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 한편 구술서에는 이 한국관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한국어민이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이런 종류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서 유효적절한 조치를 긴급히 취해줄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⁸라고 하여 일본은 한국의 독도점유상황을 확인했고, 또한 일본영토로서의 표식을 설치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에 대해 불법점유에 항의하였던 것이다.

한국 측은 일본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한 것에 대해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1953년 7월 16일 오다카 위원이 「어제(7월3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한국이 죽도에 함정을 파견했다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2일자 로이터통신에도

6)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국무대신의 발언, 「중의원 예산위원회 18, 1953년 7월 8일」 호,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87.

7) 번역서에는 「7월 20일」 「7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6월20일은 6월 30일의 오류라고 본다.

8) 고다키(小瀧) 정부위원의 발언, 「중의원 수산위원회 12호, 1953년 7월 16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100.

한국 외무부 대변인이 2일 한국정부는 죽도에 해군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최근 일본 측이 이 섬에서 한국의 어선 및 어민을 나포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9라고 지적한 것처럼, 1953년 7월 2일 한국 해군선을 독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관헌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1953년 7월 12일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선박에 대해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국무대신 이시이 미쓰지로(石井光次郎)의 1953년 7월 15일 발언에 의하면, 일본선박 발포사건의 진위에 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7월 11일에 순시선 '헤쿠라'를 파견해서 12일 아침 5시 20분 동 섬에 도착해 본 결과가 한국어선 및 어부 다수가 섬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찰대를 상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던 때인 6시 15분 한국관헌 4명과 울릉도 경찰국 사람이 배로 다가와서 죽도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고, 퇴거를 요청했습니다만,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8시에 본선은 앞서 얘기한 4명을 귀선 시킨 후 동 섬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사카이 미나토(境港)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디만, 갑자기 열 발의 총격을 받았습디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본선에 2발의 탄흔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때 조사에 의하면 지난번 일본 측이 세웠던 풋말은 철거된 상태였고, 섬에 들어온 자는 약 14명이었는데, 그 안에 경찰관이 7명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어선 3척, 전마선(傳馬船) 한척이 있었으며, 무기는 어선 1척에 자동소총 2개를 장착하고 있었고, 경찰관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배는 20일 17시 30분 사카이 미나토(境港)로 돌아왔다. 방금 상대의 배로부터 사격이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 사격은 섬 중턱에서 행해졌으며 거리는 약 700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진위여부는 알 수 없습디만 이것은 위협사격이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10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측의 관헌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일본이 독도에 세운 풋말을 제거하고 다시 한국영토로서 풋말을 세우고, 일본순시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총격을 가하면서까지 독도를 영토로서 수호했던 것이다.11

9) 오다카 위원의 발언, 「수산위원회-9호, 1953년 7월 4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85.

10) 이시이 미쓰지로의 발언, 「참의원 본회의 22호, 1953년 7월 1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93

11) 「울릉도/독도연표」, 「독도박물관」, <http://dokdomuseum.ulleung.go.kr/board/history/list.php>, 최장근(2009) 「현대 일본의 독도 영토화를 위한 정치적 행위」, 『일어일문학연구』 제68권 제2호,

3. 평화선 선언에 대응하여 일본영토론 주장

우선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이에 반박하는 전문위원들의 주장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야마모토 위원은 1951년 2월 6일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일본영토 처리에 관해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하는 외무당국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단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크게 유구(琉球)열도나 지시마(千島)열도 문제에 앞서 가고시마현 오시마군이었던 사쓰난(薩南)제도, 아미오시마(奄美大島)를 포함한 사쓰난제도, 또는 지시마열도에 가까운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과 같은 곳이 단지 위도문제 등으로 점령군의 관할 하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시마네현(島根縣)의 죽도와 같은 곳도 그런 곳입니다. 만에 하나 그들 중 큰 곳이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부터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관할 하에 있었던 곳은 일본의 영토로 반환되어야 한다.」¹²라고 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서 규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행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야마모토위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 1951년 10월 22일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제3조와 관련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보면, 일본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조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죽도는 원래부터 시마네현의 관할이었고 또한 중요한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¹³ 「이번 기회에 죽도가 우리 영토인지 혹은 울릉도에 부속되어 조선 등에 이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¹⁴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배포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에는

p.346-362.

12) 야마모토 위원의 발언, 「중의원-외무위원회-3호, 1951년 2월 6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41.

13) 야마모토 위원의 발언, 「중의원-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6호, 1951년 10월 22일」, p. 43. 그러나 일본국회에 배부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는 일본영역에서 제외되는 것과 일본영역에 포함되는 것 2종류가 배포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53년 11월 4일 가와카미(川上)위원은 「평화조약을 비준할 때 국회에 제출된 부속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속지도를 봐도 죽도는 분명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라인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맥아더라인이 아닙니다. 별도의 선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선은 다른 곳의 행정구역을 나눈 선과 같은 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평화조약 비준국회에 제출된 「부속지도」에 이미 죽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14) 야마모토 위원의 발언, 「중의원-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6호, 1951년 10월 22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43.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죽도가 중요한 어장이기 때문에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정부가 평화조약의 비준국회에서 사전에 돌린 일본영역도에 죽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회람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위원 구사바(草葉)는 「현재의 행정구획에 죽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평화조약에서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¹⁵라고 하여 현재의 행정구역에는 죽도가 없지만,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영토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독도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일본정부 측의 다케우치 하루미는 1953년 8월 3일 맥아더라인에 대해서는 「이 해당구역 또는 기타의 다른 어떤 구역의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관한 최종결정에 대해 연합국의 정책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령이 있는데 종전직전에 철폐되었고, 평화조약규정에서도 죽도가 한국령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의 규정만 보더라도 죽도가 우리 측의 영토인 점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¹⁶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맥아더라인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영토주권을 제한한 것임에 틀림없다. 연합국의 최종적인 영토권 결정은 대일평화조약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본영토라고 적극적으로 해석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국회에 정확히 보고하려면 「연합국이 애매하게 처리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¹⁷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보고였을 것이다.

이시하라(石原幹) 정부위원은 1952년 2월 20일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죽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죽도의 영토문제에 대해 아무리 해도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상대방도 이쪽도 충분한 반성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지만, 이른바 평화조약의 규정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⁸라고 하여 평화조약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일본정부측은 거듭 평화조약이 일본영토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이다.

15) 정부위원, 구사바(草葉)의 발언, 「중의원-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6호, 1951년 10월 22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44.

16) 다케우치 하루미(竹内春海) 설명원의 발언, 「참의원-수산위원회-17호, 1953년 8월 3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119.

17) 최장근(2008)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제이앤씨, pp. 123-128. 최장근(2008) 『독도영토학』대구대학교 출판부, pp. 83-90.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백산자료원, pp.33-71.

18) 이시하라 정부위원의 발언, 「중의원-외무위원회-5호, 1952년 2월 20일」, p. 46.

일본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일본의회에서도 일본정부의 주장을 아무런 반성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무총리 오카자키 가쓰오는 1953년 3월 5일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해 「평화조약에는 일본이 권리, 권한 등을 포기해야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원래의 일본영토는 당연히 일본에 귀속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해 놓지는 않았습지만 이것은 당연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¹⁹라고 하여 일본영토로서 포기해야할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국방부가 “웨이란드 사령관이 1952년 2월 27일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죽도의 귀속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 측이) 이런 저런 성명을 내도 이것은 결국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말꼬리를 잡고 논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반 정도의 권리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²⁰라고 하여 죽도가 당연히 일본영토인 이상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입장이었다. 사실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업무태만이거나 아니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인식이 결여되었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다테 겐이치로는 「한쪽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그 성명이 효력을 갖게 될 걱정은 없습니까?」²¹라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을 묵인한다는 것을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었다.

야당위원의 죽도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요구에 대해 1953년 7월 8일 국무대신 오카자키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했던 영토 등은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섬이라거나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나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죽도는 사람이 살수 없는 바위입니다만, 쓰시마(對馬)나 사도가시마(佐渡島)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라는 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측에도 충분히 이 점을 인식시키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평화조약의 조인국에 대해서도 죽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²²라고 하

19)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국무대신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3

20)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국무대신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2.

21) 다테 겐이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3.

22)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국무대신의 발언, 「중의원 예산위원회 18호, 1953년 7월 8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88.

여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는 독도의 성격을 쓰시마(對馬)나 사도가시마(佐渡島)와 같은 일본국내의 다른 섬과 동등한 성격으로 변경하여 죽도도 일본영토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인국」 즉 미국과 영국 등의 연합국에 대해서도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에 동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쓰시마(對馬)나 사도가시마(佐渡島)와 같은 섬은 전후 연합국 측이 결정한 SCAPIN 677호나 그 이외의 조치에 의해 한국이나 다른 제3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이 아니다. 이처럼 독도는 이들 국내의 여러 무명의 섬들과는 달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국과 침예하게 대립되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에서 그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합국이 지위결정을 회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쓰시마(對馬)나 사도가시마(佐渡島)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위원 시모다 다케소는 1953년 3월 5일 평화조약에 대해 「우선 평화조약 제2조에는 조선영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서는 보코제도(澎湖諸島), 지시마열도(千島列島), 신난군도(新南群島), 세이샤군도(西沙群島) 등에 관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에 관해서는 어디가 조선인지를 확실히 써놓고 있습니다.제주도(濟州道), 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해서.... 그러므로 조선 본토와 이 세 섬을 한정적으로 거론한 점은 더욱더 일본의 논거를 강화하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²³라고 하여 조선영토의 규정에 죽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조약상의 죽도는 일본영토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사실은 평화조약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국측이 독도지위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던 것이다. 따라서 다케소의 주장은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다른 내셔널리즘적인 발상에 의한 영유권 주장이라고 하겠다.²⁴

4. 한국에 대응하여 일본영토로서의 논리계발

한국정부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논

23) 시모다 다케소 정부위원의 발언, 「참의원- 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6.

24)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pp.347-349.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 pp.3-21.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281-282. 太寿堂鼎(1966) 「竹島紛争」, 『国際法外交雑誌』第64卷 4-5合併号, p.130. 塚本学(1996)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第289号, p. 3. 塚本学(2002.6) 「竹島領有権をめぐる日韓両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2002年6月号, p.53. 下条正男(2004)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文芸春秋, pp.1-188.

리에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의 논거에 반박함과 동시에 일본영토로서의 근거를 제시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했고, 일본정부는 한국대표부에 1월 28일 구술서로 항의했다. 이로 인해 한일 간에 독도문제가 분쟁으로 표면화되었다. 한국 측은 이승만라인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를 받고 12월 12일 구술서로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반박했다. 내용인즉, 「그 구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수세기동안 조선에서 독도(獨島)라고 알려져 있는 리양쿠르암의 영유에 관해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1946년 1월 19일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²⁵에 따르면 연합국최고사령부(SCAP)가 이 섬을 일본 영유로부터 명확하게 배제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섬에는 맥아더라인의 한국 편에 놓여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죽도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에 상기시키고 싶다.」²⁶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때마침 한일회담이 진행중이어서 적당한 시기를 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52년 4월말에 이르러 한일회담이 정리되는 한편 강화조약의 발표도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견에 관해서 우리 측의 주장을 한국 측에 표명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4월 25일자 한국 대표부에 구술서를 제출하여」²⁷ 한국의 입장에 반박하여 일본영토임을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준비를 하여 ‘죽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적 논리를 만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²⁸

즉, 「제1. 죽도는 현재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島根縣 隱地郡 五箇村)의 일본이다. 제2.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는 일본정부가 죽도에 대해 정치상, 행정상의 권한 행사 혹은 행사 기도를 정지한 것일 뿐 죽도를 일본정부의 영역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각서 자체에 이 각서에 있는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가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서술된 모든 소도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제3. 맥아더라인을 규정한 각서에도 맥아더라인은 국

25)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677호가 명백히 한 것은 연합국의 조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장근 (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日語日文學研究』제71집 제2권, pp.505-521.

26) 나카무라 고타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1.

27) 나카무라 고타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1.

28) 나카무라 고타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1-62. 이상의 주장이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최초의 주장이다. 이는 가와카미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가와카미 「죽도의 영유」 참조.

가통치권, 국제적 환경 또한 어업권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가 맥아더라인의 한국 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한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 맥아더라인은 이미 철폐되었으므로 이런 유형의 논의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제4. 일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죽도가 수세기 동안 독도(獨島)라고 하는 한국의 영유 하에 있었던 사실은 없다.」²⁹⁾는 것이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역사적 권원의 인식에 의거하여 야당의 야마모토(山本利) 위원도 1952년 5월 23일 역사적 권원에 대해 「죽도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더욱이 일본영토로서 선언된 것은 1905년(明治38년) 2월의 일이므로 한일합병(1910년) 보다 이전의 일로, 바로 이점 때문에 죽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³⁰⁾라고 하여 죽도는 1910년 일본이 조선식민지와 무관하게 그 이전인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무주지 선점에 의해 영토조치된 것으로 죽도는 포츠담선언의 「폭력으로 인한 도취」와는 무관한 일본영토이라는 것이었다.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죽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의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한 치의 영토라도 일본영토에서 분리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법의 정의에 의한 정당한 주장이 아니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이 제시하는 역사적 권원은 죽도영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한제국은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1900년에 칙령 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그 관할구역에 독도(석도라는 명칭으로)를 한국영토로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영토라고 편입 조치했다는 것 또한 침략행위로서 포츠담선언의 「폭력으로 도취」한 것에 해당된다.

일본정부측의 나카무라 고하치로는 종래의 역사적 권원에 대한 인식에 의거하여 1953년 3월 5일 「죽도는 1926년(大正15년)에 오치군(隱地郡) 고카무라(五箇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05년(明治38) 2월 22일에 시마네현 고시40호로 시마네현의 오키도서(隱岐島嶼)의 소관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다른 어느 나라로부터도 이 섬의 영유 문제에 관해 이의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29) 나카무라 고하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1-62.

30) 야마모토(山本利) 위원의 발언, 「중의원-외무위원회-26호」, 1952년 5월 23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p. 46-47.

명백합니다. 더 나아가 방금 지적하신 광업권의 시굴권(試掘權)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시굴권을 침해당하면 조금 전 대신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광업권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³¹ 또한 「그 광업권 이외에 특별한 권리라고 하면 오키도(隱岐島) 사이고초(西郷町)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섬에서 ‘강치’포획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섬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 포획이 시작된 이래 매년 여름이 되면 어부들이 강치잡이를 하거나 어패류를 채취하기 위해 이 섬에 들어가서 임시 가옥을 지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³²라고 하여 「한국 측 주장은 다음 서술한 사유에 의해 죽도가 이전부터 일본영토라는 사실에 아무런 변경을 가할 수 없다.»³³라고 하여 일본정부는 일본국회에서 죽도의 영유권에 대해 한국 측에는 역사적 권원이 전혀 없으나, 일본 측에는 충분한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측의 권원에 대해,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종래 강치조업을 한 적이 있고, 「조선총독부 관리구역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³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영토로서의 관리를 위해 광업시굴권의 침해가 없도록 실효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상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독도에 상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위원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는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논리만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국회의 야당위원들은 독도문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한국 측의 논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가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조작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국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는 1953년 7월 15일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사적 사실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후 여러 사령부 등의 조치를 보더라도 이 점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가질만한 점이 없습니다. 원래 총사령부의 지령은 영

31) 나카무라 고타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8.

32) 나카무라 고타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8.

33) 나카무라 고타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61-62.

34) 나카무라 고타치로의 발언, 「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1953년 3월 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70.

토의 변경 등을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점령 중의 일시적인 조치를 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 평화조약 안에서 일본의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한 지역은 명료하게 쓰여 있는 것으로 그 이외의 것은 당연히 일본의 영토인 것이며, 또한 이른바 맥아더라인 등도 영토의 변경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史實)로 말해도 국제법적으로 말해도 일본영토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³⁵라고 하여 한국 측이 제시한 역사적 사실, 총사령부의 조치, 평화조약안, 맥아더라인 등은 한국영토로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한국 측이 내세운 근거 중에 대일평화조약 이전에 연합국 조치가 최종적인 죽도의 영유권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영토로서 처리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³⁶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이전까지 일본영토로서의 권리를 제외하여 한국영토로서의 권리를 인정했던 사실에 입각하여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실효적 점유상태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히려 대일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회에서 야당위원들에게 평화조약에 의해 죽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거듭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과연 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지위가 결정되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 한국의 독도점유에 대응하여 죽도관리조치 단행

연합국이 SCAPIN 677와 맥아더라인 등으로 죽도를 한국영토로 취급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연합국의 중심국가인 미국을 설득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 규정되기를 전 방위적으로 노력했다. 하나는 초안에 연합국이 조치한 한국영토로서의 독도를 일본영토의 죽도로 변경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

35)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국무대신의 발언, 「참의원 본회의 22호, 1953년 7월 15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93.

36)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 p.260.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집』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pp.1-278.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출판부, pp.1-299.

37)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연구보전협회편, 『獨島領有權과 領海와 海洋主權』독도연구보전협회, pp. 165-195. 나이토 세이추 저, 광진오/김현수 역 『한일간독도·죽도논쟁의 실제-죽도·독도문제입문/일본외무성 '죽도'(竹島)비판-』책사랑, pp.57-59. 內藤正中·金柄烈(2007) 『歷史的檢証獨島·竹島』岩波書店, pp.199-222.

나는 미일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재일미공군의 폭격연습지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서 미일합의에 의해 미 공군의 연습장이 되었기 때문에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자는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트에 접근하여 1차-5차 초안까지 한국영토로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제6차 초안에서 일본영토로 변경하는 것에 성공했고, 후자는 미일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재일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 독도를 포함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전자는 미국의 동조를 얻어내었지만 영연방국가의 이의제기로 최종적으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서 규정되는 것에는 실패했다. 후자는 재일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는 지정되었지만,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고 일본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국이 폭격연습장 지정을 철회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정부위원은 1953년 8월 3일 「강화조약 발효 후에도 훈련지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간 일본어선이나 조사선이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지역으로부터 해제된 후 신속히 시마네현의 순시선이 갔는데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해안보안청의 순시선이 총격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외무성에서 7월 13일 한국에 엄중히 항의를 했습니다. 시마네현청에서는 ‘돌고래’어업의 허가와 공동어업권의 면허 등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실제로 어업권의 설정까지는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³⁸라고 하여 일본이 전후 독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미일행정협정에 의해 미 공군의 폭격 연습지였기 때문이었으나, 폭격연습지로서 해제되고 난후에는 신속히 시마네현이 돌고래조업을 허가하고, 또한 공동어업권의 면허도 허가했다. 이처럼 일본영토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 측이 불법적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순시선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순시선에 대해 한국이 총격을 가한 사건에 대해 야당전문위원 오다카 위원은 1953년 7월 4일 「이 죽도는 1905년(明治38) 2월 우리 일본의 영토로서 처음으로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에 편입되었습니다. 다만, 종전 후 주둔군의 폭격훈련지로 사용되었고, 얼마 전 해제되어 일본정부에 반환된 것으로, 이번과 같은 한국국민의 행동은 분명하게 영토를 침해하고 있으며 불법입국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있습니다.»³⁹라고 하여 일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야당위원들도 아무런 비판없이 일본정부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이 일본영토를 침해당했다는 것이었다.

38)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정부위원의 발언, 「참의원-수산위원회-17호, 1953년 8월 3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117.

39) 오다카 위원의 발언, 「수산위원회-9호, 1953년 7월 4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p. 86.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한국독립과 더불어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연합국에 의해 한국에 반환되었던 것이고,⁴⁰ 한국의 실효적 점유상황에서 주일미 공군이 일방적으로 폭격연습지로 지정했으나, 한국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여 폭격연습기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⁴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온전하게 실효적으로 관리하게 된 한국영토인 것이다.

6. 맺으면서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논증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정부는 해방과 더불어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의 실효적 관리를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난후 일본의 독도침입을 우려하여 평화선을 선언하여 한국연안어업의 보호와 동시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점유를 시도했지만, 한국국민의 노력으로 일본순시선에 충격을 가하는 등 강경조치로 대응했다. 한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독도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암묵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 실효적 점유에 대해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제시하여 한국영토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어업조합에 조업권을 허가하고 동시에 미일행정협정으로 미국이 일본영토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일행정협정으로 제일미공군의 독도폭격연습지로 지정된 것은 바로 평화조약에서 미비한 영토적 권원을 보완하기 위한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일행정협정이 한국영토 독도로서 연합국이 조치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했다.

셋째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순시선이 정기적으로 독도를 관찰하고, 몰래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영토의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한국어민을 독도에서 철수를 강요했다. 이러한 독도도발에 대해 한국측은 충격 등의 물리력으로 일본순시선의 독도접근에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일본정

40) 최장근(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日語日文學研究』제71집 제2권, pp.505-521.

41) 나이토 세이추 저, 광진오/김현수 역(2010) 『한일간독도·죽도논쟁의 실제-죽도·독도문제입문/일본외무성 ‘죽도’(竹島)비판-』책사랑, pp.57-59.

부가 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정부의 물리력에 의한 독도점유에 대해 조약체결의 당사자였던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국 측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단지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서 당사간의 해결방침을 내세웠다. 일본정부가 야당전문위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参考文献】

-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연구보전협회편, 『獨島領有權과 領海와 海洋主權』독도연구보전협회, pp. 165-195.
-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제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 191.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최장근(2005) 『일본영토의 분쟁』백산자료원, pp.33-71...
- _____ (2008) 『독도영토학』대구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9)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제이앤씨, pp. 123-128
- _____ (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日語日文学研究』제71집 제2권, pp.505-521.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 p.260.
-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집』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pp.1-278.
-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출판부, p.299.
- 나이토 세이추 저 · 광진오/김현수 역(2010) 『한일간독도 · 죽도논쟁의 실체-죽도 · 독도문제입문/일본외무성 ‘죽도’(竹島)비판-』책사랑, pp.57-59
-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pp.347-349.
-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 pp.3-21.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281-282.
- 太寿堂鼎(1966) 「竹島紛争」, 『国際法外交雑誌』第64卷 4-5合併号, p.130.
- 塚本学(1996)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第289号, p. 3.
- 内藤正中 · 金柄烈(2007) 『歴史的檢証獨島 · 竹島』岩波書店, pp.199-222.
- 下条正男(2004)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文芸春秋, pp.1-188
- 「울릉도/독도연표」, 『독도박물관』, <http://dokdomuseum.ulleung.go.kr/board/history/list.php>

要旨

対日平和条約には独島問題と関聯して日本領土から分離された地域は「済州道、巨門島、鬱陵島」と規定されている。当時韓国は1945年解放とともにSCAPIN677号とマッカーサーラインによって独島で韓国漁業が行われるなど独島の実効的占有がなされていた状況であった。ところが、対日平和条約には独島の地位について言及されていなかった。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曖昧な規定を悪用した日本の独島侵略防御や韓国海岸の魚族資源保護のために平和線を宣言した。平和線宣言後、日本国会においてはこのような状況をめぐって日本政府が積極的に対応しなかったと野党専門委員から非難された。それに答えて、日本政府は日本領土として最善を尽くして対応措置をとっていると野党専門委員の非難に対応した。

日本政府は日本領土から除外された「済州道、巨門島、鬱陵島」以外の島はすべて日本領土であるとして平和条約で‘竹島’が日本領土として決定されたと主張した。一方、韓国は独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る状況の中で歴史的根源に基づいて独島が鬱陵島の属島であるとして韓国領土だと主張した。

そのような状況のなかで韓国政府は実効的支配状況を保持するために平和線を宣言して独島周辺への日本人の出入りを禁じて領土主権を固守した。独島が平和条約で日本領土として決定されたならば、連合国は韓国の平和線宣言を不法的なものと断定して除去が余儀なくされたはずである。アメリカ側は韓国の平和線措置に関与しなかったのだ。このような状況を見ても、連合国は平和条約で独島を日本領土として認めてい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すなわち現在の独島問題は平和条約で韓国が支配していた状況で当事者間に解決するものにしたと解釈するのが妥当であろう。

キーワード：対日平和条約、平和線、李承晩ライン、独島、領土問題、竹島

투 고 : 2012. 2. 29
1차 심사 : 2012. 3. 17
2차 심사 : 2012. 4. 7

